

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. 5. 28 선고 2019가단9444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이행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결 2020. 5. 7

판 결선고 2020. 5. 28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. 5.20. 접수 제678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4. 5. 20.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4. 5. 20. 접수 제 67863호로 채무자 C, 근저당권자 피고,채권최고액 1,99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'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끼라 한다).

나.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,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2018. 7. 11.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.

한편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의 집행비용으로 80만 원을 납부하였다.

다.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9. 11. 19.

수원지방법원·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19년 금 제23()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인 1,990만 원과 집행비용인 80만 원을 합한 2,07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2호증,을 제1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근저당권설정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2000다48265판결).

나.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물상보증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 권의 채권최고액 1,990만 원 및 위 임의경매절차의 집행비용 80만 원의 합계 2,070만 원을 변제공탁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변제공탁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 결정의 청구금액이 1,99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. 6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위 채무가 완제되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

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앞서 본 바와 같이, 채무자가 아닌 단순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강윤희

별지